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09-72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상품안내서 우편배달제도 시험서비스(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08-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우정사업본부장

상품안내서 우편배달제도 시험서비스 공고

1. 상품안내서 우편배달제도

가. 개요

- 1) 백화점, 대형할인마트의 상품안내서(카탈로그, 쿠폰북 등) 우편물을
우체국, 마케팅 대행업체 및 위탁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접수하여
배달하는 서비스

나. 상품명 변경

- 1) “백화점 상품안내서 우편배달제도”를 “상품안내서 우편배달제도”로 변경

다. 우편물 접수

- 1) 접수관서 : 전국 총괄우체국
- 2) 대상 우편물 : 1회 5천통이상 발송하는 백화점, 대형마트의 상품안내서
및 광고전단 우편물 중 “아파트 지역” 배달 우편물(자국접수 자국배달)

3) 중량 및 규격 : 50g ~ 1,200g 까지

가) 수취인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우편물(예 : 세대주님)

나) 상품안내서 : 중량 50g을 초과하는 통상우편물(카탈로그, 쿠폰북 등)

다) 광고전단 : 대행업체를 통해 접수된 규격외 통상우편물에
한하여 50g 이하도 접수 가능

※ 광고전단 : 대형마트 세일, 아파트 분양, 학원안내 등을 선전
하거나 광고하는 글이 담긴 종이쪽(카탈로그, 쿠폰북 등 책자
형태는 불가)

라) 인사장, 안내장, 명함, 지로용지, 문서 등 인사말 또는 안내문
성격의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은 대상 우편물에서 제외

라. 우편물 배달

1) 우체국에서 직접 마케팅한 경우와 마케팅 대행업체에서 마케팅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직접 배달

2) 위탁배달대행업체에서 우체국에 접수한 상품안내서 우편물은
우편물 접수 후 당일 또는 익일 배달

2. 우편요금 수납

가. 우편요금 적용

중량(g)	요금(원)	중량(g)	요금(원)	중량(g)	요금(원)
~ 50	136	401~450	520	801~850	904
51~100	184	451~500	568	851~900	952
101~150	232	501~550	616	901~950	1,000
151~200	280	551~600	664	951~1000	1,048
201~250	328	601~650	712	1001~1050	1,096
251~300	376	651~700	760	1051~1100	1,144
301~350	424	701~750	808	1101~1150	1,192
351~400	472	751~800	856	1151~1200	1,240

나. 상품안내서 우편물 마케팅 및 배달대행 수수료

- 1) 마케팅 대행업체에서 상품안내서 우편물을 마케팅하여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상기 우편요금의 10%를 대행업체에 지급
- 2) 위탁배달 대행업체에서 상품안내서 우편물을 마케팅하여 직접 배달한 경우에는 상기 우편요금의 55%를 대행업체에 지급

부칙

이 공고는 2009.12.7.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08-9호 (2008.2.15.)는 폐지한다.